

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번호	관련 제266호
의결년월일	99. 12. 27 (제75회)

발의년월일 : 1999. 12. 24

발 의 자 : 서영석 의원 외 14명

1. 주 문

-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를 맞아 국민에게 보다 다가가고 복지의 혜택을 제공하여 주고자 2000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를 목표로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동을 선정(우리 시는 도당동, 중1동, 심곡본1동, 오정동 등 4개 동) 운영하여 오고 있음
- 주민자치센터는 지방행정계층 구조를 바꾸고 작고 생산적인 행정구축과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며, 동의 현 행정기능을 축소하고 복지·문화편의 시설로 전환하고자 실시하는 것임.
- 이에 주민자치센터가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프로그램 등 방향을 제시하여 부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되고 모범적인 자치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“부천시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”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가. 구성목적 : 2000년도 전면실시를 대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프로그램의 민과 관의 조화, 그리고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각도의 방안을 모색하여 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성있는 운영과 주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

나. 활동기간 : 2000. 1~2000. 3월(3개월 간)

다. 위 원 수 : 9인(위원회별 : 3인)

2. 제안이유

- 가. 정부에서는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동의 기능을 주민편의시설인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동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음.
- 나. 우리 시의 경우 35개 동 중 4개 동에서 시범운영하여 오고 있는 바, 그간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지역특성과 상반되는 프로그램 운영, 중복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다. 내년 35개 전 동의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프로그램의 조정,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 여러 가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음.

라. 이에 주민자치센터대책특위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자 함.

3. 관련법규

가. 지방자치법 제36조,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

나.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